

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재 의원 대표발의

의안번호 : 10744

발의연월일 : 2014. 5. 27.

발의자 : 이학재 · 김장실 · 서상기 · 김상민 · 심학봉
이우현 · 박명재 · 이완영 · 강은희 · 김관영
이에리사 의원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사립대학의 학적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무를 '한국사학진흥재단'에 위탁하고 있음.

한편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발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폐지·폐쇄되는 대학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 대학의 학적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도 늘어날 것임.

이에 폐지·폐쇄된 대학의 학적부 관리·보관 및 각종 증명서

발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본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폐지·폐쇄되는 대학의 학사 및 학적서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·보관 및 모든 증명서 발급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표 1 |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사업) ① _____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·보관 및 모든 증명서 발급</u>
6. (생략) ②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